

202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 확정 공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 심사 결과에 따라 면허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3일

파 주 시 장

1. 면허의 종류와 사업구역 : 개인택시 운송사업 / 파주시
2. 면허대수 : 5대
3. 신규면허 대상자 : 5명[붙임1] 참고
4.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사업 개시 신고하여야 하며, 아래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수송시설 확인신청 : [붙임2] 별지 제1호 서식
 - 나.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: [붙임2] 별지 제2호 서식
 - 다.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: [붙임2] 별지 제3호 서식
5. 행정사항과 관련한 차량 확보 및 장비 설치를 운송 개시 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,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숙지·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문의사항 연락처 : 파주시 버스정책과 택시화물팀(☎ 031-940-5292) -